



제 417회 국회 (임시회)
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부가통신사업자와 단체의 자율규제 근거 마련 등 〉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01203호)

2024. 8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건오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부가통신사업자와 단체의 자율규제 근거 마련	2
2.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자료 제출	10
※ 참고자료 1. EU의 플랫폼 규제 법안 내용	1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정부 제출

나. 제출연월일 : 2024. 6. 28

다. 회부연월일 : 2024. 7. 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부가통신사업자와 단체의 자율규제 근거 마련

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(안 제22조의11제1항 신설),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(안 제22조의11제3항 신설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11제7항 신설).

현행	개정안
<신설>	<u>제22조의11(자율규제) ①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, 기술발전 등 혁신 촉진,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는 활동(이하 “자율규제”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</u> <u>②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효율적인 자율규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율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

③ 정부는 자율규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1. 자율협약의 제정·개정 및 시행

2.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자율점검 및 개선

3. 이용자 불만사항의 처리

4.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

5.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의 공개

6.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활동

④ 정부는 자율규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규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자율규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

2. 자율규제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

3. 그 밖에 자율규제 확산에 필

	<u>요한 사업</u> ⑤ <u>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⑥ <u>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⑦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
--	--

□ 검토사항

-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필요 시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자율기구를 설치·

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), 정부의 자율규제 촉진·지원 시책 마련 및 확산 사업 추진 근거를 두며(안 제22조의11제3항 및 제4항), 부가통신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 시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(안 제22조의11제7항)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플랫폼 자율규제를 촉진하려는 내용임.

○ 디지털 사회가 고도화되고 대형 플랫폼 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 경쟁,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다양한 생태계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- 이에 EU에서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 촉진(「디지털 시장법(DMA: Digital Markets Act)」) 및 이용자 보호 강화(「디지털 서비스법(DSA: Digital Services Act)」)를 위한 법률 각각 제정¹⁾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도모하고 있음.

○ 개정안은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 및 이슈 변화 등에 적시 대응이 필요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, 강도 높은 입법적 규제 보다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지원하여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임.

- 디지털 플랫폼은 네트워크·데이터·AI 등 신기술이 총합된 분야이고 기술·업태 등이 끊임없이 변화·발전하는 영역으로서, 특히 검색·메신저·e커머스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

1) ※ 참고자료 1. EU의 플랫폼 규제 법안 내용 참조

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플랫폼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음.

○ 플랫폼 정책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볼 때, 민간의 자율규제 참여 유인을 제고하여 플랫폼 자율규제 생태계를 확산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.

-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운영을 지원해 왔고, 2023년 5월에는 “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”를 통해 오픈마켓 분야 입점업체 거래관행 개선,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방안 등²⁾을 발표한 바 있음.

○ 다만, 플랫폼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률안들도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-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플랫폼 서비스 환경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「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」³⁾,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대한 중요하고 보편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「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

2) 관계부처합동, 「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」, 2023.5.11.

3) 전해숙의원 대표발의(2106369), 2020.12.11.

관한 법률안」⁴⁾이 발의(임기만료 폐기)되었던 바 있으며,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의 「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」 등 다수의 플랫폼 규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던 바 있음.

- 또한 2024년 8월 19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정법안 총 7건이 계류 중임. 정부의 자율 규제 우선 추진 입장 관련하여 자율 규제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·광고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, 위 법안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행위 규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우리 위원회도 외국기업의 한미 FTA 위반 주장에 따른 국내 기업의 역차별 주장,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대한 제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한편, 안 제22조의제7항은 과징금 등의 처분 감경 근거를 두면서 구체적 감경 기준 및 상한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, 법률의 명확성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에 위임하도록 하거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면서

4) 정필모의원 대표발의(2123966), 2023.8.23.

감경 가능 상한을 명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.

○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임.

-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·경제적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이용자 편익과 사회 후생을 증진하는 한편, 생태계에 다양한 부작용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동력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‘플랫폼 자율규제’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, 현재 「민간 플랫폼 자율기구」가 임시로 출범('22.8월~)하여 민간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정부의 논의 지원을 통해 일부 성과⁵⁾들을 도출 중임.
- 플랫폼 자율규제를 더욱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자
▲민간의 자율규제활동 근거, ▲정부의 지원 시책·인센티브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임.

○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기구의 설립·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.

- 다만, '22.8월 출범한 「플랫폼 민간 자율기구」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, 본 개정안에 따라 추후 설립되는 자율기구의 구체적인 운영

5)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▲플랫폼 입점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마련, ▲사기 쇼핑물로 인한 소비자 집단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대응체계 마련, ▲검색·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마련 등이 있음.

내용·방식·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「플랫폼 민간 자율기구」에서 마련한 기존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.

- 동 개정안 입법 추진과 별개로, 논의 추이에 맞춰 자율기구 설립·지원 등에 관한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 본 개정안에 따라 설립되는 자율기구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·방식·절차 등에 대한 관계부처 간 MOU 체결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2.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자료 제출

시·도지사가 자가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, 자가통신설비의 시정·사용정지·개조·수리나 그 밖의 조치 현황 등의 사항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‘보고’하도록 하던 것을 ‘제출’하도록 함(안 제88조제4항).

현행	개정안
제88조(통계의 보고 등) ① ~ ③ (생략)	제88조(통계의 보고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<u>보고</u> 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 <u>제출</u>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
☐ 검토사항

- 현행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8조제4항에 따르면, 시·도지사는 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,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시정·사용정지·개조·수리나 그 밖의 조치 현황,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·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등6)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

6) 제88조(통계의 보고 등) (생략) ④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1.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

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함.

- 개정안은 현행 문언상 “보고”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“제출”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
- 자가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는 2015년 12월 동법 개정⁷⁾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바 있음.

-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“지방으로 이양된 자가통신설비 관련 사무에 대해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관련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‘보고’하던 것에서 ‘제출’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”는 취지에서 본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
02)6788-5225

2. 제67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시정·사용정지·개조·수리나 그 밖의 조치 현황

3.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

4. 제104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

7) <전기통신사업법(법률 제13518호, 2015. 12. 1.)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이양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, 제67조, 제90조 및 제10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·변경신고 및 그 밖의 행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, 과징금·과태료 부과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의 행위로 본다.

※ 참고자료 1. EU의 플랫폼 규제 법안 내용

□ 디지털시장법('23.5월 발효, ' 24.2월 완전적용)

- (대상) ▲EU 내 매출액(75억 유로(약 10조원)) 또는 시기총액(750억 유로(약 100조원)), ▲이용자 수(최종사용자 45천만명 이상, 입점업체 1만명 이상), ▲핵심 서비스* 제공(3개국) 요건 충족 사업자

* 이커머스, SNS, 검색엔진, 운영체제, 온라인 광고서비스, 클라우드, 동영상 공유, 웹브라우저, 가상비서 등

- (주요 사전 의무) ▲이용자 권리 보장(기본서비스 구독해지·앱 삭제 등), ▲메세징 서비스 간 상호호환성 보장*, ▲타 앱스토어 설치 허용(애플 타깃), ▲플랫폼 외부에서 입점업체의 계약체결 허용, ▲입점업체의 마케팅·광고 데이터 접근 보장 등

* 예 : 카카오톡과 라인 등 인스턴트 메세징 서비스 간 메시지 송수신 기능 제공

※ 메세징 서비스의 상호호환성 보장은 점진적으로 보장 기능 확대 추진(~27년)

- (주요 금지행위) ▲입점업체 데이터 무단사용, ▲자사우대, ▲특정 결제방식(인앱결제) 강제, ▲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플랫폼 외부에서 개인정보 무단 추적 등
- (제재수단) 위반 시 전세계 총 매출의 최대 10% 벌금 부과(위반 반복 시 최대 20%), 8년간 3번 이상 위반 시 기업 분할명령 등 구조적 조치 가능

□ 디지털서비스법('22.11월 발효, ' 24.2월 완전적용)

- (대상) 정보 중개에 관여하는 대다수사업자를 포함*하되, 차등 규율**

* (적용예외) 중소기업자(50명 이하 고용, 매출액 1천만유로(약 134억) 이하)

** ①에는 투명성 확보 등 기본적인 의무만 부과하되, ⑤까지 규제사항을 누적적으로 부과

- | |
|--|
| ① 중개서비스 :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(예: 인터넷접속서비스) |
| ② 호스팅 서비스 : 클라우드, 웹 호스팅 서비스 등 |
| ③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: 유럽인구 10%(4,500만명) 이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(구글) |
| ④ 온라인 플랫폼 : 온라인상거래서비스, 앱스토어, SNS, O2O 서비스 등 판매자-소비자 연결 서비스 |
| 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: 유럽인구 10%(4,500만명) 이상 서비스 제공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|

- (일반 주요의무) ▲불법 제품·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방지조치, ▲불법콘텐츠 삭제 등 대응조치, ▲미성년자 대상 표적광고 금지, ▲표적광고를 위한 민감한 개인정보 사용 일부 제한, ▲다크패턴* 금지 등

* 다크패턴 :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(설계)된 사용자 인터페이스(UI)를 뜻하는 말

- (초대형 사업자 주요의무) ▲알고리즘을 포함한 시스템 위험평가(△불법콘텐츠 유통, △헌법상 기본권, △시민담론·공공 안전 위험 등) 및 완화 조치, ▲추가적인 추천시스템 선택권, ▲온라인광고 투명성 의무 등
- (제재수단) 사업자 총 매출의 최대 6% 벌금 부과(반복 시 사업 금지 명령 가능)